

현장실습 운영규정

제정	2000.06.09.
개정	2002.04.09.
개정	2008.06.09.
개정	2009.03.01.
개정	2011.09.01.
개정	2012.03.01.
개정	2013.06.01.
개정	2014.06.23.
개정	2016.03.01.
개정	2016.10.31

제 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학칙 제 25조 제 3항 및 시행세칙 제 21조 1항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재학생의 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등을 규정하여 재학생의 현장실습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① “현장실습”이란 학교와 현장실습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쌍방 간에 합의한 기간 동안 현장실습기관에서 실무교육 및 실습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학점을 부여하는 산학협력 교육과정을 말한다.
- ② “현장실습기관”(이하 “실습기관”이라 한다)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기업 등 학생의 실무 교육 및 실습이 가능한 국내·외 기관을 말한다.
- ③ “산학협력”이란 제 2조 ①항 및 ②항에 따른 학교와 실습기관 간의 인적, 물적 교류관계를 말한다.
- ④ “현장실습생”(이하 “학생”이라 한다)이란 학점 인정 및 전공 관련 실무 경험을 제공받기 위해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학생을 말한다.
- ⑤ “현장실습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이라 한다)란 현장실습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운영하는 조직을 말한다.
- ⑥ “현장실습지원비”(이하 “실습지원비”라 한다)란 실습교육의 목적이 아니라 실질적 근로의 목적으로 현장실습이 이루어질 경우 현장실습의 원활한 수행 및 현장 실습 장려 등을 위하여 실습기관에서 학생에게 제공하는 지원금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① 각 스쿨은 교내에서 수업할 수 없는 전공교과목이 현장실습을 통하여 실시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스쿨 교육과정에 의하여 산업체 현장실습을 전공 교과목으로 이수하도록 계획된 각 스쿨은 소정

기간의 현장실습을 계획하고 실시하여야 한다.

③ 현장실습은 전공 및 교육과정과 연관된 실습기관(산업체)에서 1일 8시간 및 주 40시간을 실시하여야 하며, 1일 8시간 미만이거나 1주 3~4일 등의 간헐적인 아르바이트 또는 단기근로형태는 현장 실습 시수로 인정되지 않는다. 실습 수행 과정상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실습기관이 학생의 동의를 얻어 1주간 최대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으며,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의 야간 현장 실습은 운영할 수 없다.

④ 현장실습은 운영 시점에 따라 “학기제 현장실습(1학기, 2학기 현장실습)”과 “계절제 현장실습(하계, 동계학기 현장실습)”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수행지역에 따라 국내 현장실습과 국외 현장실습으로 구분한다. “학기제 현장실습”은 단기현장실습(4주 160시간)과 장기현장실습(15주 600시간) 실습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계절제 현장실습”은 4주 160시간 이상 실시한다.

제4조(운영체계) ① 현장실습은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 총괄하며, 스쿨 소속교수는 스쿨원장의 지휘로 현장실습 실무를 담당한다.

② 현장실습과 관련된 학생생활 상담, 취업진로 상담, 면접클리닉 등과 관련된 업무는 지도교수와 현장실습지원센터가 담당한다.

제 2장 현장실습기관

제5조(현장실습기관 선정조건) ① 현장실습기관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중소기업 기본법, 동 법 시행령에 의거 적법하게 설립된 업체
2. 정부투자기관 관리 기본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정부투자기관
3. 법령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 등의 지원을 받는 연구 기관
4. 노동관계법 위반 전력이 없는 기관
5. 학생들의 진로계획을 고려하여 선정된 기관
6. 위 각호에 준하다고 총장이 인정하는 업체 또는 기관

② 제5조 ①항의 각 호에 준하여 학교와 실습기관 간의 현장실습협약을 기반으로 현장실습을 개설 운영하여야 한다

③ 현장실습기관을 선정할 때 해당 전공의 NCS 직무 혹은 스쿨별 ‘교육과정 개발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한 직무의 역량을 실습할 수 있는 업체로 선정한다.

제6조(현장실습 운영조건) ① 실습기관은 현장실습 운영 전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신청서와 운영계획서를 학교에 제출하고 이를 협의한다.

1. 실습기관 정보
2. 현장실습 시간 및 기간
3. 현장실습 대상 전공, 인원 및 학년

4. 실습지원비 지급여부, 지급액, 미지급 사유

5. 실습장소, 실습업무, 실습지도자

② 실습기관에서는 현장실습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현장실습 학생 교육, 지도 및 관리를 위한 현장교육 담당자의 배치

2. 학교와 협의하여 정한 현장실습 운영 계획

3. 현장실습에 필요한 시설, 장비, 물품 등의 확보 및 제공

4. 현장실습 학생 지도, 출석, 평가 관리

③ 계절제 현장실습, 학기제 단기현장실습에 참여중인 학생은 교육시설재난공제회, 학교경영자영업 대상책임보험 및 학생실습종합보험 등 보험에 가입·대비될 수 있어야 한다. 산재보험·고용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 등 4대 보험은 스쿨원장과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④ 학기제 장기현장실습(15주 600시간) 교육에 참여하는 학생은 산재보험·고용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4대 보험 가입이 어려운 경우 학생실습종합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⑤ 실습기관은 실습 과정이 실질적 근로에 해당하는 경우 최저 임금 이상의 실습지원비를 지급하며 실습지원비를 수령한 학생은 실습비 입금 내역을 스쿨에 제출한다. 비지급할 경우 학교와 학생, 실습기관이 사전에 협의하고 동의해야 한다. 스쿨 원장은 실습비 비지급 기관으로 현장실습생을 파견할 경우 현장실습비 비지급기관 파견사유서를 현장실습지원센터로 제출한다.

제7조(현장실습기관 변경) ① 현장실습기관의 귀책사유로 현장실습이 중지되는 경우, 스쿨원장의 승인을 받아 현장실습 산업체를 변경하여야 한다.

② 학생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현장실습기관의 변경은 승인할 수 없다.

제 3장 현장실습운영위원회

제8조(현장실습운영위원회) ① 총장은 현장실습과 관련된 산업체 선정, 현장실습계획 심의, 현장실습 실시, 신청학점 검토, 현장실습 점수평가 등의 제반사항을 심의, 의결할 수 있는 현장실습운영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② 현장실습운영위원회는 현장실습과 관련된 제반사항 및 총장이 요구하는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③ 현장실습운영위원회는 현장실습 프로그램 평가 설문, 현장실습 평가서, 현장실습 순회지도 보고서, 스쿨의 현장실습 결과보고서 등을 통하여 현장실습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현장실습 종합평가 결과를 각 스쿨에 공개하여 현장실습과 관련된 업무가 개선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현장실습운영위원회 위원장은 현장실습지원센터장이 되고, 위원은 각 스쿨원장이 추천한다.

⑤ 현장실습운영위원회는 취업지도위원의 구성인원으로 한다.

⑥ 현장실습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제 4장 학생 현장실습

제9조(현장실습 개설시기) ① 제 3조 ④항의 “학기제 현장실습”은 각 스쿨의 교육과정에 따라 학기 중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 3조 ④항의 “계절제 현장실습”은 학생의 최종학년 방학기간 중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복학생 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현장실습을 이수하지 못한 학생은 스쿨원장의 요청에 따라 개설시기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③ “학기제 현장실습” 신청 기간에 현장실습 참여 신청을 하지 않은 학생이 수강신청 정정기간 종료 후부터 중간고사 전까지 기간 중에 취업을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해당 학생은 지도교수를 경유하여 미출석 취업에 따른 현장실습신청서를 스쿨원장에게 제출한다
2. 스쿨원장은 현장실습신청서를 확인한 후 미출석 취업자 학점부여 적용대상 여부를 확인 한 후 관련 과목((가칭)현장실습Ⅱ)을 추가한다.
3. 해당 학생은 학기제현장실습에 준하여 취업한 산업체에서 현장실습을 실시한다.
4. 해당학생의 학점은 P/F로 산출하며 기타 학생준수사항과 학생지도, 퇴사시 절차는 학기제 현장실습규정을 따른다.

제10조(현장실습 현황보고) ① 스쿨원장은 현장실습 시행계획서와 신청서류를 실시 1주 전까지 현장실습지원센터로 협조전을 통하여 제출하고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② 각 스쿨원장은 현장실습 완료 후 2주 내에 현장실습지원센터로 현장실습 실시결과와 결과보고서를 협조전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현장실습지원센터장은 각 스쿨별 현장실습 실시결과 및 특이사항을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현장실습 경비) ① 스쿨 교육과정에 의하여 필요한 경우, 총장의 승인에 따라 실습비 및 현장실습 지도자 임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계획에 의하여 산업체 또는 외부기관의 지원금이 있을 경우, 그 지원금으로 실습경비를 충당할 수 있다.

제12조(현장실습 사전교육) ① 현장실습지원센터는 현장실습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준비해 두어야 한다.

1. 현장실습 일정 및 사전교육 사항
2. 스쿨별 현장실습 프로그램
3. 현장실습에 필요한 경비 산정
4. 현장실습 평가에 필요한 서류

5. 기타 현장실습에 필요한 사항

② 스쿨에서는 현장실습운영을 위한 사전수요조사를 실시하고 현장실습 대상자가 결정되면 스쿨에서는 현장실습에 필요한 사전교육(3시간 이상)을 실시하여야 하며, 현장실습 사전교육 후 현장실습 사전교육 결과보고서를 현장실습지원센터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현장실습에 필요한 사전교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인관계 및 커뮤니케이션 교육

2. 성희롱 예방교육

3. 인성 및 어학교육

4. 현장실습교육을 위하여 스쿨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교육

제13조(학생 의무사항) ① 현장실습지에 파견된 학생은 현장실습 기간 중 취득한 산업체 또는 기관의 기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산업체 내규 및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현장실습 기간 중 질병, 안전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스쿨과 지도교수에게 연락하여야 한다.

제14조(현장실습의 무효) ① 학생이 현장실습 중에 학교의 명예를 심히 손상하였을 경우, 현장실습운영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학생의 현장실습을 무효 처리할 수 있다.

② 학생 본인의 귀책사유로 현장실습을 중도 포기할 경우, 해당 학생의 현장실습을 무효 처리할 수 있다.

③ 현장실습 중 무단결근은 학칙에 준용하여 현장실습 기간으로 산정되지 않는다.

④ 현장실습 중 회사 경영상 또는 실습환경 변화의 사유로 현장실습을 포기할 수 있다.

⑤ 현장실습을 포기하는 경우 실습생과 지도교수, 현장실습기관 지도자가 협의하여 현장실습 포기를 결정하고 현장실습포기원을 스쿨에 제출하며 곧 바로 학교로 복귀하여야 한다. 학교로 복귀 한 후의 성적평가는 Pass/Fail 제에서 등급제로 전환된다.

제15조(현장실습의 유보) 현장실습지원센터장은 현장실습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지도교수 승인 후 유보할 수 있다.

1. 질병

2. 관호상제

3. 폐업

4. 천재지변, 기타 총장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6조(현장실습 순회지도) ① 스쿨원장은 현장실습 실태를 파악하고 지도하기 위하여 순회지도교수를 정하여 현장실습 기간 중 방문 또는 유선을 통하여 주기적 순회지도를 하여야 한다.

② 스쿨원장은 현장실습 종료와 함께 현장실습 순회지도 보고서를 취합하여 현장실습지원센터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현장실습일지 작성) ① 현장실습 교육에 참가한 학생은 현장실습일지를 매일 기록하고, 현장실습 지도자와 지도교수가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 5장 현장실습 학점 및 성적평가

제18조(현장실습 취득학점) ① 학기제 장기현장실습은 15주(600시간) 이상의 현장실습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은 최소 15학점에서 최대 24학점으로 한다. 해당학기에 수강 신청된 교과목 중에서 실습교과에 한하여 부여한다. 현장실습의 성적평가는 Pass 및 Fail로 부여한다. 단 수업연한 초과자의 이수 최소 학점은 원장의 권한으로 결정한다.

② 계절제 현장실습, 학기제 단기현장실습은 4주 160시간 이상의 현장실습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현장실습으로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은 교육과정표에 의하여 2학점으로 하며, 성적평가는 Pass 및 Fail로 부여한다.

③ 현장실습의 학점은 학생의 입학년도에 스쿨에서 제출한 교육과정표에 준하며, 복학생 및 유급생은 현재 재학 중인 학년의 학점에 준한다.

제19조(현장실습 성적평가) ① 현장실습 평가는 절대평가로 한다.

② 계절제 현장실습과 학기제 현장실습의 성적평가는 NCS의 직무수행준거를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고, 현장실습 지도자 50%, 지도교수 평가 50% 기준으로 평가하며, 60점 이상을 Pass로 판정한다.

③ 스쿨 교육과정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 해당 스쿨의 평가방법에 의하여 성적평가를 할 수 있다.

제20조(기타) ① 이외에 현장실습 이수 인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② 학기제 장기현장실습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기제 장기현장실습(실습학기제 현장실습)세부기준에 따른다.

제 6장 부 칙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 ② (시행일) 이 규정은 2002년 4월 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③ (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6월 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④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⑤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9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⑥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⑦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6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⑧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6월 23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⑨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⑩ (시해일) 이 규정은 2016년 10월 3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별지 1호]

현장실습 참여 신청서(학생용)				
스 쿠		전 공		
학 번		성 명		
주 소				
연 락 처	Mobile			home
	E-mail			
현장실습 지원분야	구분	실습분야 또는 기관명	희망분야	실습내용
	1지망			
	2지망			
희망지역				
현장실습 구분	계절제 현장실습 <input type="checkbox"/>		학기제 단기현장실습 (4주160시간) <input type="checkbox"/> 학기제 장기현장실습(15주600시간) <input type="checkbox"/>	
지원신청	<p>본인은 현장실습이 학점취득을 위한 교육과정임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실습기간에서 실습지원비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음)하며, 상기와 같이 현장실습 신청서를 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 : _____ (서명)</p> <p style="text-align: center;">청강문화산업대학교 총장 귀하</p>			

[별지 2호]

현장실습 참여 신청서(기업용)

신청 기관	기관명				대표자명	
	기업분류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현장 지도자	성명		직위		
		부서		휴대폰		
		office		FAX		
E-mail						
요청 사항	실습기간	20 . . . - 20 . . .				
	관련전공			실습인원	명	
실습내용						
본 기관에서는 위와 같이 청강문화산업대학교 현장실습 참여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기관명 _____ (서명 또는 직인) 청강문화산업대학교 총장 귀중						

[별지 3호]

현장실습 사전교육 결과보고서

스 쿨	
전 공	
교육일시	
교육강사	
교육장소	
교육내용	
참가학생	외 명

위와 같이 현장실습 사전교육 결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스쿨원장 _____

붙 임. 참가학생 명단 1부. 끝.

청강문화산업대학교 총장 귀중

[별지 4호]

현장실습 시행계획서				
구 분	계절제 현장실습 <input type="checkbox"/>	학기제 단기현장실습(4주160시간) <input type="checkbox"/> 학기제 장기현장실습(15주600시간) <input type="checkbox"/>		
스 쿨				
협약업체	외 개	실습비 지급업체	개	
	산학협정체결업체	개	실습비 비지급업체	개
참여교수	명			
참여학생	명			
위와 같이 현장실습 시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스쿨원장: _____ (서명 또는 인)				
불 임 1. 현장실습참여신청서(학생용) 각 1부 2. 현장실습참여신청서(기관용) 각 1부 3. 현장실습 실습생 배정 현황표 1부 4. 현장실습 참여기업 현황표 1부 5. 현장실습 사전교육결과보고서 1부 6. 현장실습 운영계획서 각 1부 7. 현장실습비 비지급기관 파견사유서 각 1부. 끝.				
청강문화산업대학교 총장 귀하				

[별지]5호

현장실습 실습생 배정 현황표

전공명(학과명):

[별지 6호]

현장실습 참여기관 현황표

전공명(학과명):

[별지 7호]

현장실습 교육과정 서약서			
스 쿠		전 공	
학 번		성 명	
실습 대상 기관			
산 업 체 명		실 습 부 서 명	
현 장 지 도 자		부 서 연 락 처	
실 습 기 간	20 년 월 일 부터	20 년 월 일까지	(근무일수: _____)

【유의사항】 현장실습 기간은 매학기 스쿨 행정실에서 고시한 일정에 따라야 합니다.

【 서 약 서 】

본인은 다음과 같이 현장실습생으로서의 의무를 준수하며, 현장실습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 실습생은 현장실습의 교육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대학의 명예를 손상 시켜서는 안 된다.
 2. 실습생으로서의 신분과 목적 이외의 활동을 하여서는 안 된다.
 3. 현장실습기관의 제 규정 및 안전관리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4. 현장실습 활동 저해 사유 발생 시에는 즉시 대학에 연락하여야 한다.
- 다음의 해당자는 학점인정을 불허하며 사안에 따라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현장실습 기관 내규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무단결근자
 2. 고의적으로 실습기관의 기밀을 누설하는 등 업무를 방해한 자
 3. 학생의 신분을 벗어난 행위로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킨 자
- 기타
 1. 현장실습 중 인지하게 된 회사의 제반사항 일체를 외부에 누설하지 않는다.
 2. 현장실습 중 실습업체의 규정에 따르지 않아 발생하는 제반 사고는 본인이 책임진다.

본인은 현장실습 보험 가입을 위해 개인정보를 대학이 활용하는데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며, 상기와 같이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청강문화산업대학교 총장 귀하

[별지 8호]

현장실습 협약서

(이하 “실습업체”라 한다)와 청강문화산업대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는 “대학” 소속 학생들(이하 “실습생”이라 한다)의 진로 선택에 도움을 주고, 현장에서 요구하는 전문지식과 경험 습득을 목적으로 하는 현장실습학점제(이하 “현장실습”이라 한다) 운영과 관련된 지침을 준수하고, 상호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 (현장실습의 구분 및 기간)

- ① 현장실습은 현장실습 기간에 따라 학기제(정규학기 중 실시) 및 계절제(방학기간 중 실시)로 구분하여 실시 한다.
- ② 현장실습은 1일 8시간/주 40시간을 기준으로 연속적으로 실시되어야 하며, 최소 4주(160시간) 이상 실습하여야 한다.

제2조 (“실습업체”的 현장실습 운영)

- ① “실습업체”는 “실습생”的 전문지식 함양과 경험습득을 위하여 제2조에 따른 학기제 또는 계절제 현장실습 기간에 맞는 이론 및 실습교육 내용을 수립한다.
- ② “실습업체”는 현장실습이 내실 있게 실시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실습생”的 전공과 희망을 고려하여 배치함으로써 다양하고 폭넓은 현장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최선의 기회를 제공한다.
- ③ “실습업체”는 현장실습을 지도할 능력을 갖춘 담당자를 배치하여 “실습생”이 성실히 현장실습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④ “대학”이 현장실습계약의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 이에 협조하는 한편 그 확인 결과를 현장실습에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 ⑤ 현장실습기간이 종료되었을 때에는 “실습업체”는 “대학”이 정한 기준에 따라 “실습생”的 현장실습내용을 평가하여야 한다.

제3조 (“대학”的 현장실습 운영)

- ① “대학”은 현장실습 운영 계획 및 일정 수립 후 “실습업체”와 “실습생”에 대한 안내 및 홍보를 실시한다.
- ② “대학”은 “실습업체”로부터 현장실습 운영에 필요한 전공, 모집인원, 실습기간 등의 내용으로 현장실습 참여 신청을 접수, 검토 후 실습생 지원 및 모집에 관한 업무를 실시한다.
- ③ “대학”은 “실습업체”的 실습생 선발에 필요한 정보 및 업무지원을 실시한다.
- ④ “대학”은 선발된 실습생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준수될 수 있도록 사전교육을 실시한다.
 1. 실습생은 실습기간 동안 주어진 과제를 성실히 수행한다.
 2. 실습생은 실습기간 동안 “실습업체”的 사규 등 제반 수칙을 준수한다.
 3. 실습생은 실습을 위한 기계, 공구, 기타 장비가 파손되거나 분실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실습생은 실습 과정에서 알게 된 “실습업체”的 기밀사항을 누설하지 아니한다.
- ⑤ “대학”은 현장실습 중 “실습업체”的 현장 방문을 통하여 “실습업체”와 “실습생”的 견의 사항 및 애로 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다.
- ⑥ “대학”은 대학의 현장실습 관련 규정에 따라 현장실습 종료 후 “실습업체”와 “실습생”的 제출 서류 검토 후 실습생에 대한 학점 인정 절차를 실시한다.

제4조 (“실습생”的 권리 및 의무)

- ① “실습생”은 현장실습 시 산업현장의 적응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적정한 지도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② “실습생”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장실습과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 ③ “실습생”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현장실습과제를 성실하고 근면하게 수행한다.
 2. 현장실습기간 중 사규 등 제반 수칙을 준수한다.
 3. 현장실습을 위한 기계, 공구 기타 장비가 파손되거나 분실되지 않도록 주의 깊게 사용한다.

4. 현장실습도중 알게 된 “실습업체”의 기밀을 누설하지 않는다.

제5조 (현장실습시간 및 장소)

- ① 현장실습 기간은 20 . . . ~ 20 . . . (주)으로 하여 총 시간 이상이 되도록 실습한다.
- ② 실습시간은 “실습업체”의 근로시간을 기준하여 1일 8시간 실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③ 실습 장소는 “실습업체”의 사업장 또는 사업과 관련된 장소로 하고, 실습생의 보건·위생 및 산업재해 등으로부터 안전한 장소로 지정토록 “실습업체”와 “대학”이 협의한다.

제6조 (실습지원비) “실습업체”는 실습생에게 숙식비, 교통비, 실습보조금 등의 실습지원비를 별도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할 경우 “대학”과 협의하여 지급한다.

제7조 (지도교수 지정) “대학”은 현장실습의 효율적 운영과 실습생의 올바른 지도를 위하여 지도교수를 지정하여 운영 할 수 있다.

제8조 (보험가입) “대학”은 현장실습 기간 동안 실습과 관련하여 실습생에게 발생할 수 있는 상해에 대비한 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이와 별도로 “실습업체”는 “실습업체”의 필요에 따른 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

제9조 (안전·보건상의 조치)

- ① “실습업체”는 실습생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실습생”에게 안전·보건교육 및 필요한 안전상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② 실습기간 중 실습생이 산업재해를 당하였을 경우 “실습업체”와 “실습생”은 상호 협력하여 보험금 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 (현장실습내용의 변경 및 해지)

- ① “실습업체”는 현장실습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 “대학”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② “실습업체”와 “실습생”은 현장실습기간 동안에 계약을 해지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계약해지 3일전에 해지예고를 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실습업체”와 “실습생”은 “대학”과 미리 협의한다.
- ③ 계약해지의 고지는 서면으로 하며 해지 예고 시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야 한다.

제11조 (협약의 효력 및 기간) 본 협약의 효력은 협약체결일로부터 발생하며 협약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단 “실습업체” 또는 “대학” 중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자동 갱신되는 것으로 한다.

제12조 (기타) 본 협약에 명기되지 아니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본 협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3부를 작성, “실습업체”와 “대학”이 각각 서명 날인하고 “실습생”이 동의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실습업체) 기관명 :

주 소 :

대표자 :

(서명, 인)

(대학) 기관명 : 청강문화산업대학교

주 소 :

대표자 :

(서명, 인)

(실습생) 소 속 : 청강문화산업대학교 _____ 스쿨 _____ 전공

주 소 :

성 명 :

(서명, 인)

* 1개사에 여러 명이 계약할 경우 연명하여 서명 또는 날인 가능

성명	스쿨(전공)	주소	서명 또는 날인

[별지 9호]

현장실습 출석부					
성명			전공/학과		
실습기간			학번		
실습기관명			현장지도자		
출결 사항	<input type="checkbox"/> 출석 : _____일 / <input type="checkbox"/> 결석 : _____일 / <input type="checkbox"/> 지각 : _____일				
	구분	월/일	요일	출결내용	비고
	1주	/	월	출석(), 결석(), 지각()	
		/	화	출석(), 결석(), 지각()	
		/	수	출석(), 결석(), 지각()	
		/	목	출석(), 결석(), 지각()	
		/	금	출석(), 결석(), 지각()	
		/	토		
		/	일		
	2주	/	월	출석(), 결석(), 지각()	
		/	화	출석(), 결석(), 지각()	
		/	수	출석(), 결석(), 지각()	
		/	목	출석(), 결석(), 지각()	
		/	금	출석(), 결석(), 지각()	
		/	토		
		/	일		
3주	/	월	출석(), 결석(), 지각()		
	/	화	출석(), 결석(), 지각()		
	/	수	출석(), 결석(), 지각()		
	/	목	출석(), 결석(), 지각()		
	/	금	출석(), 결석(), 지각()		
	/	토			
	/	일			
4주	/	월	출석(), 결석(), 지각()		
	/	화	출석(), 결석(), 지각()		
	/	수	출석(), 결석(), 지각()		
	/	목	출석(), 결석(), 지각()		
	/	금	출석(), 결석(), 지각()		
	/	토			
	/	일			

[별지 10호]

[별지 11호]

순회지도 보고서			
실습기관명			
현장실습학생현황	방문일시		
	전공(학과)	학번	성명
학생현장태	근무환경	매우우수 <input type="checkbox"/> 우수 <input type="checkbox"/> 보통 <input type="checkbox"/> 미흡 <input type="checkbox"/> 매우미흡 <input type="checkbox"/>	
지도사항			
실습기관의견또는방문결과제언			
상기와 같이 순회지도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지도교수: _____ (서명, 인)			
청강문화산업대학교 총장 귀하			

[별지 12호]

산업체 방문 결과보고

방문일자: 년 월 일

학 과		담당교수	(서명)	
산 업 체 현 황	산업체명			
	대 표 자	담당자		
	전화번호	팩스번호		
	우편번호	이 메 일		
	주 소			
활 동 내 용	협 의 자			
	전화번호	이 메 일		
	방문목적			
	기타목적			
	지출비용	원	지출사유	
	지출비용내역			
	동반출장자	기념품갯수		
협의내용				
향후산학업무 추진계획				

[별지 13호]

현장실습 성적평가서			
인적사항	전공(학과)	학번	성명
실습사항	산업체명		
	산업체 주소		
	근무부서		
	실습기간	년 월 일	년 월 일
산업체 평가		대학 평가	
평가 내용		평가	
출결상태			
성실성(실습하는 기본 태도)			
협동성(인화 등의 원만한 인간관계)			
창의성(실습을 통한 개척의욕 등)			
작업성취도(실습결과의 성취 수준)			
현장지도 책임자의 의견			
년 월 일		년 월 일	
현장지도자: _____		지도교수: _____	
종합평가		<input type="checkbox"/> P <input type="checkbox"/> F	
종합의견			
지도교수			
상기와 같이 현장실습 성적평가서를 제출합니다.			
※ 현장실습은 NCS 능력단위별 수행 준거를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음			
년 월 일			
청강문화산업대학교 총장 귀하			

※ 현장실습 성적평가 기준

- ▷ 평가항목별로 매우우수는 A, 우수는 B, 보통은 C, 개선요망은 D로 평가
- ▷ 평가결과 D가 3개 이상 또는 평점 60점 이하이면 F를 급제함

[별지 14호]

현장실습 평가서

구분	내용	배점	평가					점수					
			A	B	C	D	E						
운영	현장실습교육 추진 절차의 적절성	20	20	18	16	14	10						
	현장실습교육을 위한 대학의 지원활동의 적절성	20	20	18	16	14	10						
성과	현장실습교육 내용의 실효성	20	20	18	16	14	10						
	실습현장에서의 현장실습교육 방법의 적절성	20	20	18	16	14	10						
	현장실습교육 참여 기업체의 적절성	20	20	18	16	14	10						
계		100											
평가 의견 및 제언													

스쿨		전공(학과)	
----	--	--------	--

상기와 같이 현장실습 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평가자

(서명, 인)

청강문화산업대학교 총장 귀하

[별지 15호]

현장실습 만족도 조사(학생용)

아래의 설문은 현장실습에 참여한 귀하의 생각이나 의견을 묻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문항에 대해 귀하의 생각이나 의견과 가장 유사하다고 생각하는 번호에 ○표하여 주십시오.

문 항	평 가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 현장실습 내용의 실효성					
1. 현장실습은 귀하의 전공지식과 실무능력에 대해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2. 현장실습은 취업 전에 기업문화, 조직 분위기 등 직장생활을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3. 현장실습은 향후 나의 진로와 취업계획 수립과 졸업 후 직장생활에 도움이 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4. 앞으로 현장실습 과정을 다른 동료나 후배에게 추천하겠다.	①	②	③	④	⑤
■ 현장실습 운영의 적절성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5. 현장실습계획은 적절하게 구성되었고, 그 계획에 따라 진행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6. 지도교수의 현장방문지도는 현장실습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고 방문 횟수는 적절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7. 대학 및 지도교수는 실습과 관련된 학생들의 요구 및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8. 현장실습과목의 학점부여 규정(ex. 이수학점)은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9. 실습 전 오리엔테이션은 현장실습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문 향	평 가				
■ 현장실습 기업체에 대한 만족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0. 실습업체(실습을 나간 기업체)는 업체환경(시설, 기자재 등) 및 안전 등에서 현장실습 교육장으로 적합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11. 기술지도위원(기업체의 실습담당자)의 지도 내용은 전공 관련 실무지식을 습득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12. 기술지도위원은 전공지식뿐만 아니라 취업 또는 직업관 형성에 도움이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13. 현장실습과 관련된 내용에 대하여 현장지도자나 다른 직원과의 의사소통은 원활하게 진행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14. 향후 실습업체에서 입사 제의가 들어온다면 취업할 의사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 기타 향후 현장실습을 위한 제안					
15. 아래의 보기 중에 효과적인 현장실습을 위하여 무엇보다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4개 선택하여 주십시오.	① 현장실습에 대한 사전 계획 및 준비 ② 체계적인 현장실습 프로그램 개발 ③ 현장실습의 기업체 선정 ④ 현장실습에 대한 대학의 전반적인 운영능력 ⑤ 상해보험 또는 보수 지급 등의 재정적 지원 ⑥ 현장실습 기업의 환경 및 안전조건 ⑦ 현장지도자의 실무교육 능력 ⑧ 진로나 취업과의 연계 방안 ⑨ 지도교수와 현장지도자의 적극적인 참여 및 지도 ⑩ 현장실습 이수로 인한 취득 학점수 조정 ⑪ 대학과 기업체간의 협조 정도				
16. 위의 사항 외에 현장실습에 참여하면서 개선이 필요한 추가적인 사항이 있으면 서술하여 주시오					
17. 현장실습에 참여하면서 느꼈던 점이나 학교 수업과 다른 장점이 있었다면 무엇입니까?					

♠ 설문에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별지 16호]

현장실습 만족도 조사(현장지도자용)

아래의 설문은 현장실습에 참여한 귀하의 생각이나 의견을 묻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문항에 대해 귀하의 생각이나 의견과 가장 유사하다고 생각하는 번호에 ○표하여 주십시오.

문 항	평 가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 현장실습 내용의 실효성					
1. 현장실습은 학생들의 전공지식과 실무기술을 좀 더 심도 있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2. 학생들은 현장실습을 통하여 회사 분위기나 기업문화 등을 경험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3. 현장실습은 학생들이 향후 진로와 취업계획을 세우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 현장실습 운영의 적절성					
4. 현장실습계획은 적절하게 구성되었고, 그 계획에 따라 진행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5. 지도교수의 현장방문지도는 학생들이 현장 실습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6. 대학 및 지도교수는 실습과 관련된 기업체의 요구 및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7. 현장실습을 통해 기업체와 대학 간의 교류가 활발하게 진행되는 등 산학협력에 도움이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8. 현장실습에 참여한 학생들은 현장실습에 높은 관심을 보였고, 적극적으로 실습에 참여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 기타 향후 현장실습을 위한 제안

9. 귀 기업에서는 몇 명의 학생이 현장실습을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1명 ② 2명 ③ 3명 ④ 4명 이상

10. 현장 실습의 유형으로는 어느 형태가 가장 적절한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 ① 계절제 (방학기간 중 한 달) ② 학기제 (16주) ③ 반학기제 (8주)

11. 기업체의 입장과 실습생 입장을 모두 고려하여 학기제 현장실습을 실시할 경우

- ① 주 5일 모두 기업체에서 실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② 대학 수업과 병행하여 실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학 수업과의 병행 실시의 예- 주 5일중 일부는 현장실습 실시, 나머지는 대학수업 참여)

12. 아래의 보기 중에 효과적인 현장실습을 위하여 무엇보다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4개 선택하여 주십시오.

- ① 현장실습에 대한 사전 계획 및 준비
 ② 체계적인 현장실습 프로그램 개발
 ③ 현장실습의 기업체 선정
 ④ 현장실습에 대한 대학의 전반적인 운영능력
 ⑤ 상해보험 또는 보수 지급 등의 재정적 지원
 ⑥ 현장실습 기업의 환경 및 안전조건

- ⑦ 현장지도자의 실무교육 능력
 ⑧ 진로나 취업과의 연계 방안
 ⑨ 지도교수와 현장지도자의 적극적인 참여 및 지도
 ⑩ 현장실습 이수로 인한 취득 학점수 조정
 ⑪ 대학과 기업체간의 협조 정도

13. 위의 사항 외에 현장실습에 참여하면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었던 점이 있으시면 서술하여 주십시오.

14. 한 학기동안 현장실습에 참여하면서 느꼈던 현장실습의 긍정적 효과 또는 현장실습학점제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서술하여 주십시오.

♠ 설문에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별지 17호]

현장실습 이수 증명서

성 명: _____

소 속: _____

학 번: _____

* 실습내용

실습기관	
실습기간	
실습기관 주소	
종합의견	
이수내용	현장실습(하계) / 2학점 / PASS

상기 학생은 현장실습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청강문화산업대학교 총장

[별지 18호]

현장실습 기관 변경신청서			
스 쿠		전 공	
학 번		성 명	
연 락 처	Mobile	home	
	E-mail		
변경내용	변경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기 업 체		
	대 표 자		
	주 소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기 간		
	실습내용		
지도교수			
변경사유			
현장실습 구분	계절제 현장실습 <input type="checkbox"/>		학기제 단기현장실습(4주) <input type="checkbox"/> 학기제 장기현장실습(15주) <input type="checkbox"/>
상기와 같이 현장실습 기관 변경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스쿨원장 _____			
청강문화산업대학교 총장 귀하			

[별지 19호]

현장실습 프로그램 운영계획서

1. 실습기관명

2. 현장실습 프로그램 운영 목표

3. 실습기간 . . . ~ . . . (개월)

4. 실습시간 : ~ : (토요일 : ~ :)

5. 실습관리

현장지도자

직위 :

성명:

실습부서 및
실습 인원

실습부서

실습인원

명

명

명

명

명

6. 실습계획

오리엔테이션

부서배치방법

실습방법

실습직종(과정)	실습 일정	실습 내용

* 실습직종, 실습내용 등 현장실습운영프로그램에 관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작성(별지 가능)

7. 실습지원비 지급여부

지급		비지급	
지급금액			
지급방법		비지급사유	회사규모가 영세해서 지급할 수 없다는 것은 사유가 될 수 없음
지급횟수			

8. 사회보험 가입여부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비가입
------	--	------	--	------	--	------	--	-----

9. 기타사항

위의 운영계획서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회사 대표

(인 또는 서명)

청강문화산업대학교총장 귀하

<참 고>

실습 프로그램 예시

[1] 오리엔테이션

- 현장실습기관 소개, 현장 견학(공장, 연구소 등) 직장문화 이해 제고, 직장매너, 직장내 인간관계 등 현장실습 실시 이전에 직장 (연수) 생활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고 장래 진로선택과 취업준비에 도움이 되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오리엔테이션을 실시

[2] 분야별 직무부여, 실습생 관리 및 실습 실시

- 현장실습기관에서는 참여 연수생이 보다 알찬 현장실습을 통해 기술이나 기능 및 실무를 습득할 수 있도록 하여 실효성 있는 실습이 이루어지도록 직무를 부여하고
 - 실습 중에는 실습과 관련한 애로사항 파악, 필요시 개별상담 등을 통해 원활하게 실습을 마칠 수 있도록 관리
- 아래 열거한 내용들은 예시 사항이므로 현장실습기관에서는 참여 실습생이 적성에 맞는 연수를 실시하여 장래 진로설계 능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배려
 - ① 사무관리 업무의 분담
 - 문서작성, 데이터입력, 파일정리, 복사 등
 - ② 각종 연구 또는 issue보고서의 작성(정치, 경제 등)
 - 자료수집 및 관련분야 연구 등
 - ③ 민원인 전화 답변.상담(민원업무보조)
 - ④ 설문지 작성.조사[시장조사(market survey)]
 - ⑤ TV, 신문 등 보도내용 monitoring

- ⑥ 외국자료 번역(문헌조사, 각국 사례조사 등)
- ⑦ 홈페이지 개선 및 업데이트
 - 디자인 변경, 자료 업데이트 등
- ⑧ 홍보자료 기획 및 작성(Catalogue 등)
- ⑨ 데이터베이스 입력.관리
- ⑩ 단기 프로젝트 직접 참여(환경 등 특수 분야)
- ⑪ 행사 기획 및 진행 보조
- ⑫ 실험기자재 정리등 실험실 세팅
- ⑬ 기업 회계처리 업무보조
- ⑭ 재고관리 system 관리.개발
- ⑮ 집체 교육 등

③ 실습 마감

- 현장실습기관은 현장실습기관 전산시스템에서 참여 실습생을 평가하고 실습과정에서 느낀 점, 도움이 되었던 점, 개선해야 할 점 등을 파악하여 현장실습 참여 만족도 조사 실시 (<http://me.ck.ac.kr/index.php/auth>)
ID & PW : 사업자등록번호(동일)

[별지 20호]

사유서

스 쿨		학 번	
전 공		이 름	
현장실습구분	계절제현장실습 <input type="checkbox"/>	학기제 단기현장실습 <input type="checkbox"/>	학기제 장기현장실습 <input type="checkbox"/>
현장실습기관		사업자등록번호	
현장실습기간		지도교수	
사유			
위와 같이 사유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스쿨원장 _____			
※ 1개사에 여러 명이 해당할 경우 연명 가능			
청강문화산업대학교 총장 귀중			

스쿨	전공	학번	성명	실습기간	지도교수

[별지 21호]

현장실습 포기원

현장실습포기로 인해 해당과목은 NP처리되며 졸업학점 부족으로 졸업이 불가능할 수 있음

스쿨		전공	
학번		이름	
현장실습구분	계절제현장실습 <input type="checkbox"/> 학기제 단기현장실습 <input type="checkbox"/> 학기제 장기현장실습 <input type="checkbox"/>		
현장실습기관		사업자등록번호	
현장실습 신청기간		현장실습 참여기간	
현장실습 포기일자		복교일자 (학기제 장기현장실습일 경우)	
수강신청학점		지도교수	
포기사유			
현장실습 중도포기를 위해 참여생, 현장지도자, 지도교수가 협의하였고 위와 같이 현장실습 포기원을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참여자 _____ (인)			
현장지도자 _____ (인)			
지도교수 _____ (인)			
청강문화산업대학교 총장 귀중			

[별지 22호]

현장실습비 비지급기관 파견 사유서

현장실습기관		사업자등록번호	
현장실습기간		지도교수	
현장실습구분	<input checked="" type="checkbox"/> 계절제현장실습	<input type="checkbox"/> 학기제 단기현장실습	<input type="checkbox"/> 학기제 장기현장실습
스 쿨		전 공	
학 번		이 름	
사유			
위와 같이 사유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스쿨원장 _____ (서명 또는 인)			
※ 1개사에 여러 명이 해당할 경우 연명 가능			
청강문화산업대학교 총장 귀중			

스쿨	전공	학번	성명	실습기간	지도교수